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06
----------	-----

2018. 4. 5. (목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종욱 의원 등 6인

나. 발의일자: 2018년 3월 14일

다. 회부일자: 2018년 3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2018년 3월 27일

(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종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의 공정
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
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 추가 및 변경(안 제3조)
 -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(추가)
 - (현행) 지역주민 → (변경) 충청북도민
- 직속기관 등의 사용허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)
- 권리양도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최광주)

- 이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시설 사용대상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, 시설 사용 허가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,
- 제3조의 사용대상에서 ‘지역주민’을 ‘충북도민’으로 변경하고,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직속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용대상의 의미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용대상을 확대하여 기관 운영의 공공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,

- 제9조 사용시설 운영 공개와 제10조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권리 양도 금지 사항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정이라 판단됨.

- 다만,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은 우선적으로 학생의 교육활동 및 교직원의 연수, 복지증진이 기관 설립과 운영의 근본 취지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, 조례 개정예 따라 기관별로 기관 시설 사용 절차와 운영 방법 등 종합적인 세부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역주민” 을 “충청북도민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충청북도학생수련원” 을 “충청북도학생수련원과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역주민” 을 “충청북도민”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직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9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9조(허가시설 공개) 직속기관 등의 사용허가 대상 시설은 공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권리양도 등 금지) 직속기관 등의 시설·설비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직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사용대상) ① 직속기관 등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교육활동, 교직원복지, 각종 교육행사 및 <u>지역주민의 평생교육</u>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<u>충청북도학생수련원</u>은 수련기관 공동사용을 위해 타 시·도교육감과 협약 체결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③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·설비 일부를 교직원·기관·단체 및 <u>지역주민에게</u>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사용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<u>충청북도민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충청북도학생수련원과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 <u>충청북도민</u>----- ----- . <u>다만,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직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(허가시설 공개) <u>직속기관 등의 사용허가 대상 시설은 공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운</u></p>

<신 설>

제9조 (생 략)

영할 수 있다.

제10조(권리양도 등 금지) 직속기
관 등의 시설·설비 등의 사용
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
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
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직속기
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
그렇지 아니하다.

제11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

[시행 2017.9.1.] [충청북도조례 제4066호, 2017.7.28., 일부개정]

제3장 직속기관

제1절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

제9조(원장)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4.5.2.>

제10조(업무)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0.8.6., 2012.6.29., 2016.7.29., 2017.7.28.>

1.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
2. 현장교육 조사 연구 및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
3. 교단지원 자료 개발·보급
4. 삭제 <2017.7.28.>
5. 삭제 <2017.7.28.>
6. 과학·수학·발명·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·보급
7. 삭제 <2012.6.29.>
8. 삭제 <2016.7.29.>
9.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
10. 과학, 수학, 발명 및 생태환경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
제2절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

제12조(원장)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4.5.2., 2016.7.29.>

제13조(업무)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03.6.5., 2016.7.29.>

1. 공무원 연수에 관한 계획과 조정
2. 연수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교재의 제작·편찬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
4. 연수생의 평가와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
제3절 충청북도중앙도서관

제15조(관장)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4.5.2., 2016.7.29.>

-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신설 2016.7.29.>

제16조(업무)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08.6.13., 2016.7.29., 2017.7.28.>

1. 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
2.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3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4. 강연회, 전시회, 독서회,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
5.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
6.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7.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
제16조의2(분관) 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[별표 1](#)과 같다.
[본조신설 2016.7.29.]

제4절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<개정 2008.6.13.>

제18조(원장) ① 문화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08.6.13., 2014.5.2., 2016.7.29.>

-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신설 2016.7.29.>

제19조(업무) 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05.7.1., 2008.6.13., 2014.5.2., 2016.7.29., 2017.7.28.>

1.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·운영
 2. 학생문화 축제,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·전시 운영
 3. 삭제 <2017.7.28.>
 4. 평생교육 지원
 5. 학생수영장 운영
 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- 제19조의2(분원) 문화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[별표 2](#)와 같다.
[본조신설 2016.7.29.]

제5절 충청북도학생수련원 <개정 2016.7.29.>

제21조(원장)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03.6.5., 2014.5.2., 2016.7.29.>

제22조(업무) 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03.6.5., 2014.5.2., 2016.7.29.>

1. 학생들의 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2. 청소년 단체의 야영과 수련활동
 3. 교직원 연수 및 후생·복지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- 제22조의2(야영장 및 휴양소) 수련원에 두는 야영장 및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는 [별표 3](#)과 같다.

[본조신설 2016.7.29.]

제6절 충청북도국제교육원 <개정 2017.7.28.>

제24조(원장) ①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4.5.2., 2016.7.29., 2017.7.28.>

-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·감독한다. <신설 2016.7.29.>

제25조(업무)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0.8.6., 2016.7.29., 2017.7.28.>

1.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4.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5. 다문화·탈북학생 교육활동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다문화·탈북학생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
제25조의2(분원) 국제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[별표 5](#)와 같다. <개정 2017.7.28.>

제7절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 <개정 2008.6.13., 2011.5.6.>

제26조(설치) ① [법 제32조](#)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(이하 “특성화고등학교등“이라 한다)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·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(이하 “공동실습소“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4.5.2.>

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[별표 7](#)과 같다. <개정 2016.7.29.>

[전문개정 2011.5.6.]

제27조(소장)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4.5.2., 2016.7.29.>

제28조(업무)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1.5.6., 2014.5.2.>

1. 특성화고등학교등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
2. 특성화고등학교등 교원의 직무연수
3.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

제9절 충청북도교육정보원 <신설 2010.1.1.>

제33조(원장) 정보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6.7.29.>

제34조(업무)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6.7.29.>

1. 교육용 콘텐츠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2. 정보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
4.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에 관한 사항
5. 교육망 및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리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
제10절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<신설 2010.10.29.>

제36조(관장) ① 충주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신설 2016.7.29.>

제37조(업무) 충주학생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6.7.29.>

1. 각종 행사의 추진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2. 도서실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 운영 및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
4.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·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
5.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충주학생회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
제37조의2(분관) 충주학생회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[별표 8](#)과 같다.

[본조신설 2016.7.29.]

제11절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<신설 2012.3.30.>

제39조(원장)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0조(업무)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6.7.29.>

1.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2.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
3.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
4.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진흥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
[제31조의1~제31조의9에서 제32조~제40조로 변경]

제14절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<신설 2016.7.29.>

제46조의3(원장) ①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본조신설 2016.7.29.]

제46조의4(업무)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학생들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청소년 단체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
3.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4. 학생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5. 교직원 연수 및 후생·복지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6.7.29.]

제46조의5(분원) 해양수련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[별표 9](#)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6.7.29.]

제15절 충청북도진로교육원 <신설 2017.7.28.>

제46조의7(원장) 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본조신설 2017.7.28.]

제46조의8(업무) 진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생 진로교육 조사, 연구에 관한 사항
3. 진로상담 및 진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4. 교직원 및 학부모 진로연수에 관한 사항
5. 진로·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 보급
6. 학교 진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7.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7.7.28.]

제16절 충청북도특수교육원 <신설 2017.7.28.>

제46조의10(원장) 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본조신설 2017.7.28.]

제46조의11(업무)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지원
2.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·직업 교육지원
3. 일반학생의 장애이해교육
4.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7.7.28.]